

교육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14 년 10 월 21 일
개정 2015 년 02 월 26 일
개정 2016 년 11 월 22 일
개정 2018 년 02 월 23 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해양구조협회 정관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육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인명구조요원”이란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이용객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2. “재난안전지도사”란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.
3. “해양안전지도사”란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.
4. “잠수구조사”란 표면공급식잠수(SSDS) 장비를 이용하여 육상과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중에서 구조·수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.
5. “스쿠버 잠수”란 수중자가호흡장치(SCUBA)를 이용하여 무감압수심 한계내에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를 말한다.
6. “인명구조강사”란 협회의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에서 인명구조 이론과 실기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7. “평가관”이란 인명구조요원 및 인명구조강사의 자격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.
8. “검정관”이란 재난안전지도사, 해양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검정하는 자를 말한다.
9. “감독관”이란 잠수구조사, 스쿠버잠수의 자격을 검정하는 자를 말한다.
10. “자문위원”이란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.
11. “교육전문강사”란 위 제2호, 제6호,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2. “교육강사”란 위 제3호 내지 제5호,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, 재산, 환경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 교육, 인명구조요원,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양성과

운용을 위한 인명구조 교육업무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, 개발, 자문 또는 의결한다.

1. 인명구조 교육의 내용이 해양사고, 해수욕장 등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 및 인명구조 활동과의 적합성 여부, 시험문제의 출제, 관리, 검정의 세부기준 등 인명구조 교육에 따른 제반업무
2. 인명구조 교육 시행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
3.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자격심의, 수당책정, 관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
4. 재난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 정책 및 제도개발.
5. 교육방침, 교육수품 및 교재개발 등과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.
6. 규정의 변경, 제도의 개선, 교육전문강사 및 교육강사의 해임 등의 심의 및 건의
7. 구조활동 관련 교육기술 모니터링사업
8. 교육관련 제규정에 관한 사항
9.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격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,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.

③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위원은 교육전문강사, 교육강사와 인명, 구급관련 이론 전문가 및 현장 실무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⑤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충원된 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자문한다.

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의안의 정리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관,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, 이사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심의 안건 중 규정의 변경, 제도의 개선, 교육전문강사의 해임 등 중요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 의결 내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임)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2.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
3.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
4.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위원(평가관 활동포함) 활동을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.

제8조(교육전문강사 등의 수당) ① 강사수당(실비포함)은 다음과 같다.

1. 평가관 : 30만원/일 (검정관, 감독관 포함)
2. 주장사 : 20만원/일
3. 보조강사 : 5만원/일

② 강사수당과 교육실비는 강사 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(교육강사회)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강사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명구조교육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

제10조 (위원의 보수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현장업무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격취득 등을 위한 평가관의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평가관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며, 그 인원은 별지와 같다.
(생략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제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